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 2025.10.23. 시행)에 따라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참여 배제 및 수급제한 규정 신설됨에 따라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보조·지원사업에서도 상습채불사업주 지원제한 적용이 필요

3. 주요내용

가.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제한(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제29조제2항제2호)

기존 명단공개 채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제외를 적용중인 고용창출·안정사업은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제외 조항을 추가하여 임금채불에 대한 지원금 제재 강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4호의2 중 “중인”을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7호 중 “중인”을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임금”을 “사업주가 임금”으로, “중인 사업주”를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① ~ ⑤ (생략) ⑥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 4. (생략) 4의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 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u>중인</u> 경우 5. ~ 8. (생략) ⑦ 삭 제 ⑧ (생략)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 ----- ----- <u>중이</u> <u>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u> <u>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u> ----- -- 5. ~ 8.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② (생략) ③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 6. (생략) 7.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 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에 따라 명단이 공개 <u>중인</u> 경 우	----- <u>중이거나</u> <u>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u> <u>습채불사업주로 지정된</u> ---- --
8.·9. (생 략) ④ ~ ⑧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 금)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 는다. 1. (생 략) 2. <u>임금</u> 등을 <u>채불</u>하여 「근로 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u>중인 사업주</u>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 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주가 임금</u> ----- ----- ----- <u>중이거나 같은 법</u> <u>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채불사</u> <u>업주로 지정된 경우</u>
3. (생 략) ③ ~ ⑦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2